

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

---

- 2021년 경남무역 -  
**종합감사 결과 공개문**

---





## 〈 목 차 〉

1. 시간외근무자 식대 지급 부적정 .....	1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

# 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## 경고 요구·통보

제 목 시간외근무자 식대 지급 부적정  
소 관 기 관 (주)경남무역  
조 치 기 관 (주)경남무역  
내 용

### 1. 현황(업무개요)

(주)경남무역(이하 “경남무역”이라 한다.)에서는 「복리후생규정」 및 「회계처리규정」에 따라 시간외근무자에 대하여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.

### 2. 관계법령(판단기준)

경남무역의 「복리후생규정」 제3조(복리후생비 지원사항)에 따르면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자에 대하여 식대를 지급할 수 있고, 「회계처리규정」 제15조(지출결의서의 첨부서류)에 따라 지출결의서에서는 지급의 성질에 따라 물품구매대금의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을, 인건비와 출장여비 지급 시에는 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, 기타경비 지급 시는 지급명세서, 영수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증빙서류에 각각 첨부하도록 되어있다.

따라서 경남무역에서는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식대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에 지급하여야 한다.

### 3. 위법부당사항(확인된 문제점)

그런데도 감사범위('17. 10. ~ '21. 10.) 기간 중 경남무역의 시간외근무자 식대 지급내역을 살펴본 결과, 시간외근무<sup>1)</sup> 내역을 확인한 수 있는 시간외근무결재 공문 및 대장 등의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[표]와 같이 총 334건, 6,354,500원의 식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.

[표] 경남무역 시간외근무자 식대 지급현황

연도	지급 월	지급 건수	대상자(명)	지급액(원)	비고
총계		334	829	6,354,500	
2017년	10~12월	52	171	1,329,300	
2018년	1~12월	113	277	2,159,300	
2019년	1~12월	65	175	1,244,200	
2020년	1~12월	43	78	638,400	
2021년	1~10월	61	128	983,300	

[출처 :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]

### 관계기관 의견

경남무역에서는 직원들이 과거부터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저녁식사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지정하는 고정거래식당을 통해 사무실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대금 결제는 총무부에서 고정거래식당 거래 장부를 증빙서로 받아서 월 단위로 결제를 하였다고 하며, 앞으로 시간외근무 대장을 만들어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식대 지급 시에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1) 「복리후생규정」 제9조(시간외 및 야간근무) : 사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원에게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음

**조치할 사항    경남무역 사장은**

- ①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시간외근무자 식대 지급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경남무역 「회계처리규정」 제15조를 위반한 실무담당자 ○○○ 과장 ○○○과 실무책임자 ○○○ 부장 ○○○를 경남무역 「징계규정」 제10조에 따라 ‘경고’ 처분하시기 바랍니다.(경고)
- ② 시간외근무 승인 등과 더불어 식대 지급기준을 자체 규정에 세부적으로 정하여 객관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(통보)
-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지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(주의)